

의안번호	제 437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

발 의 자	박성원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0년 5월 29일

충청북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

(박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7
----------	-----

발의연월일 : 2020년 5월 29일

발의자 : 박성원,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임동현, 이의영,
황규철 의원

1. 제안 이유

도내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 부진 해소를 위해 미혼모·부 학생에게 제공하는 학습지원 및 교육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라. 실태조사(안 제4조)

마. 교육과정의 탄력운영과 휴학 보장(안 제5조)

바. 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제공(안 제6조)

사. 학습지원 등(안 제7조)

아. 위탁교육(안 제8조)

자.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

라. 기 타

1) 입법예고: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0-45호

(2020. 5. 21. ~ 2020. 5. 26.)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 해소를 위하여 미혼모·부 학생에게 제공하는 학습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혼모”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미혼부”란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성을 말한다.
3. “미혼모·부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유예·휴학한 미혼모·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혼모·부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학습지원 및 교육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미혼모·부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미혼모·부 학생에 관한 실태조사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과정의 탄력운영과 휴학 보장) ①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

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미혼모·부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임신기간 및 출산·출산 후 회복기간 중 유예 또는 휴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제공)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에게 출산·양육·진로·학업복귀를 위한 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이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학습지원 등)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의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교육 이외에 학습지원 등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을 위하여 대안학교 등 별도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미혼모·부 학생이 원할 때에는 제1항의 위탁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등과의 협력) ①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지사, 경찰청장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대안학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교육기본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50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미혼모·부에 대한 실태조사(안 제4조)
- 미혼모·부에 대한 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제공(안 제6조)
- 미혼모·부에 대한 학습지원 및 위탁교육 제공(안 제7조, 8조)
-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 및 협의체 구성·운영(안 제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3조제1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충청북도교육청 대안교육위탁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규칙」 제3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에 의거하여 현재 미혼모·부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학습지원, 위탁교육 제공

3. 미첨부 사유

- 안 제4조 「실태조사」는 교육청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비용 산출 미반영
- 안 제6조, 7조, 8조의 「미혼모·부에 대한 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학습지원, 위탁교육 제공」에 소요되는 예산은 소요비용이 연간 1억 원 미만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며, 현재 미혼모·부에 대한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음
 - ※ [별 첨] 비용추계 전제, 결과 및 상세내역
- 안 제9조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 및 협의체 구성·운영」은 향후 필요시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선언적·권고적 조항에 해당됨

4. 작성자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장 최경희

[별 첨]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 전제

- 안 제 4조 「실태조사」는 교육청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비용 산출을 미반영함
- 안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미혼모·부에 대한 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학습지원, 위탁교육 제공은 「충청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 및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운영’ 예산에서 사용하고, 미혼모·부를 위한 위탁기관을 필수로 지정하며, 위탁 경비는 전일제 교육비를 지급함

2. 비용추계 결과

「충청북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20년에는 ‘학업중단 숙려제 및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운영’ 예산 128백만원 중 20백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 간 1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단위: 백만원)

사업명	연도					
	합 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미혼모·부 위탁기관)	748 (100)	128 (20)	140 (20)	150 (20)	160 (20)	170 (20)

3. 비용추계 상세내역

○ 산출근거

◦ 미혼모·부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운영비용 : 20백만원

· 위탁기관(2기관) × 위탁학생수(2명) × 위탁일수(100일)

⇒ 50,000원 × 4명 × 100일 = 20백만원

- 지급수당: 1기관 당 1일 50,000원

- 지급횟수: 400일

※ 「2020년도 충청북교육청 대안교육위탁기관 예산지급지침」에 근거하여 추계